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85
----------	------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조례 내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이 '21.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세 감면 조항의 적용기한을 '24. 12. 31.까지 3년 연장함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7. 29.~8. 18.)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p>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u>2021년 12월 31일</u>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 ----- ----- ----- <u>2024년 12월 31일</u> ----- ----- ----- -----.</p>
<p>1.·2. (생략)</p> <p>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1년 12월 31일</u>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 ----- -----.</p>
<p>1. ~ 3. (생략)</p> <p>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 -----</p>

현행	개정안
<p>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u>2021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p>	<p>-----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 ----- ----- -----</p>
<p>1. 2. (생략)</p> <p>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u>2021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 ----- ----- -----</p>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기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조항의 감면 적용기간에 대한 연장으로 추가적인 세입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재무국 세제과 나은산(02-2133-3357)